

# 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조례안

의 번 호	90
-------------	----

제출년월일 : 1999년 9월 일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개발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적 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 읍면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심의사항 (안제2조)

-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 주민의사가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확인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 주민 자치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 나. 구성 (안제3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30명내외로 구성한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마.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바. 조례·규칙심의회 : 제15회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99.8.13)원안의결

## 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지역사회 발전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가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확인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교육문제 및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주민 자치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30명内外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1.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임기 만료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의는 읍·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 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9조(실비변상) 평창군각종위원회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조례 제71호, 1964. 8. 7)는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평창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읍면개발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